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담	기 관 의 장

제494호 2017. 3. 30.(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2017-136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2017-1366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2017-1367호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2017-1368호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2017-1369호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2017-1370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2017-1371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2017-1372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 사천시 조례 제2017-1373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 사천시 조례 제2017-1374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55
- 사천시 조례 제2017-1375호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1
- 사천시 조례 제2017-1376호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 76

- 사천시 조례 제2017-137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 사천시 조례 제2017-1378호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89
- 사천시 조례 제2017-1379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 95
- 사천시 조례 제2017-1380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0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2017-638호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 10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7-61호 목단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고시 ----- 104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35호 사천시 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 ----- 11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1회 분할 가능)

제23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특별휴가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재직기간 30년 이상
으로 안식휴가를 기 실시한 직원은 10일의 안식휴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를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5)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 임	선박운 임	항공운 임	자동차(버스)운 임	숙박비(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사전” 을 “사전에”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화일” 을 “파일”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화일” 을 “파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총무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7)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인을 재등록할 때 및 공인 개각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던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컴퓨터 화일” 을 “컴퓨터 파일” 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하단 중 “컴퓨터화일” 을 “컴퓨터파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8호

사천시의회의에서 의결한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0)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사천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2)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의계약 등)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3.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제19조의3(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3)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관련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
3. 시의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4)

-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탁협약 등)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6)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3.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5조의3(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관련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
3. 시의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7)

3.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⑥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수련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9)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등)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20)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2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예비 특보 또는 태풍정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23)

계 또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5. “예방” 이란 평상 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 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 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 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사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24)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 :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25)

되며,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5. 실무반 : 시 공무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26)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다. 대책본부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 협력체계를 사전에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5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27)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장 및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28)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지역대책본부 회의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29)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0)

한다.

-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 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본부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1)

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도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32)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 받거나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3)

제 6 장 보 칙

제 21 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 66 조 제 4 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 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 2 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 66 조 제 4 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 3 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소요재원 부담률은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

제 22 조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 1 호 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 2 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34)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5)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자치부	1. 정부중요시설(시청사) 사고	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	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3. 가축 질병 4.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수도과
산업통상자원부	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6. 전력 사고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보건복지부	7. 감염병 재난, 8.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환경부	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2. 황사	환경위생과 건설수도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	13.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재난안전과
국토교통부	14. 도로터널 사고 15. 육상화물운송 사고, 16. 항공기 사고 17.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8.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19.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0.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국민안전처	21. 화재·위험물 사고 2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2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난 및 사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문화재청	24.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25. 산불, 26. 산사태	녹지공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6)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산업건설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

- 비고 : 1.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 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
2. 실무반 편성 :

통 제 관	산업건설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

-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요청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난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 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7)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주의보 발효시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5명+a+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산업건설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재난안전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5+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a)	- 재난상황관리반(1)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 유관기관(a) 여름철 : 한국농어촌공사사천시지부(a), 진주기상대(a) 겨울철 :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사(a), 진주기상대(a)
	상황보고서 작성 (1)	- 재난총괄부서(1)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 재난안전과(1)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 (1)	- 행정과(1)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주민생활지원과(a), 환경위생과(a), 해양수산과(a), 환경사업소(a), 정보통신과(a), 문화관광과(a), 건축과(a), 농업기술센터(a), 건설수도과(a), 교통행정과(a), 체육지원과(a), 녹지공원과(a), 하수도사업소(a), 투자유치과(a), 공보감사담당관(a), 도로과(a), 보건소(a), 사천경찰서(a), 사천소방서(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사천시지사, KT사천지점 등)	
<p>다. 근무방법</p> <p>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p> <p>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p>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8)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경보 발효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7+a+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산업건설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안전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7명+a+β	
상황관리 총괄반 (7+a)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a)	- 재난상황관리반(2)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재난안전과(1) - 유관기관(a) 여름철 : 한국농어촌공사사천시지부(a), 진주기상대(a) 겨울철 :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지사(a), 진주기상대(a)
	상황보고서 작성 (1)	- 재난안전과(1)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2)	- 재난안전과(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 (1)	- 행정과(1)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주민생활지원과(a), 환경위생과(a), 해양수산과(a), 환경사업소(a), 정보통신과(a), 문화관광과(a), 건축과(a), 농축산과(a), 건설수도과(a), 교통행정과(a), 체육지원과(a), 녹지공원과(a), 하수도사업소(a), 투자유치과(a), 공보감사담당관(a), 도로과(a), 보건소(a), 사천경찰서(a), 사천소방서(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사천시지사, KT사천지점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39)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 나. 태풍: 광역적인 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9+a+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산업건설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재난안전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9명+a+β	
상황관리 총괄반 (9+a)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a)	- 재난상황관리반(2)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재난안전과(1) - 유관기관(a) 여름철 : 한국농어촌공사사천시지부(a), 진주기상대(a) 겨울철 :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사(a), 진주기상대(a)
	상황보고서 작성 (2)	- 재난안전과(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	- 재난안전과(3)
	행정지원 (1)	- 행정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주민생활지원과(a), 환경위생과(a), 해양수산과(a), 환경사업소(a), 정보통신과(a), 문화관광과(a), 건축과(a), 농업기술센터(a), 건설수도과(a), 교통행정과(a), 체육지원과(a), 녹지공원과(a), 하수도사업소(a), 투자유치과(a), 공보감사담당관(a), 도로과(a), 보건소(a), 사천경찰서(a), 사천소방서(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사천시사, KT사천지점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40)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재난안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안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재난안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행정지원	행정과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1)

<p>긴급생활 안전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p>주민생활과</p>
<p>재난현장 환경정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p>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p>
<p>긴 급 통신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p>정보통신과</p>
<p>시 설 응급복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p>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체육지원과 해양수산과 도로과 건축과 건설수도와 녹지공원과 농축산과 산업단지과 하수도사업소</p>
<p>에너지 기능복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복구현황 파악 	<p>투자유치과</p>
<p>재난수습 홍 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도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p>공보감사담당관</p>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2)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재난안전과
교통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 	교통행정과 도로과
의료·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행정과
자원봉사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주민생활과
사회질서 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사천소방서
유관기관	<p>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p> <p>군부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KT, 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기상대 등</p>	필요시 협조요청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3)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담 당 관	○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8+a+\beta+\gamma$ 명	
재난상황 총괄반 (8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관리총괄팀 (3)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수습상황과약팀 (4)	- 재난수습 주관부서(4)
재난상황협업기능반(a)	- 협업기능반(12) 주민생활지원과(a), 환경위생과(a), 해양수산과(a), 환경사업소(a), 정보통신과(a), 문화관광과(a), 건축과(a), 농업기술센터(a), 건설수도과(a), 교통행정과(a), 체육지원과(a), 녹지공원과(a), 하수도사업소(a), 투자유치과(a), 공보감사담당관(a), 도로과(a), 보건소(a), 사천경찰서(a), 사천소방서(a)	
재난대응협업반(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등)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담당관·국 소속 직원(γ)	

-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4)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재난상황총괄반	상황관리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재난안전 총괄부서, 주관부서
	수습상황파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재난안전 총괄부서, 주관부서
재난상황협업기능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긴급통신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정보통신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 	해당부서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투자유치과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재난안전과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교통행정과 도로과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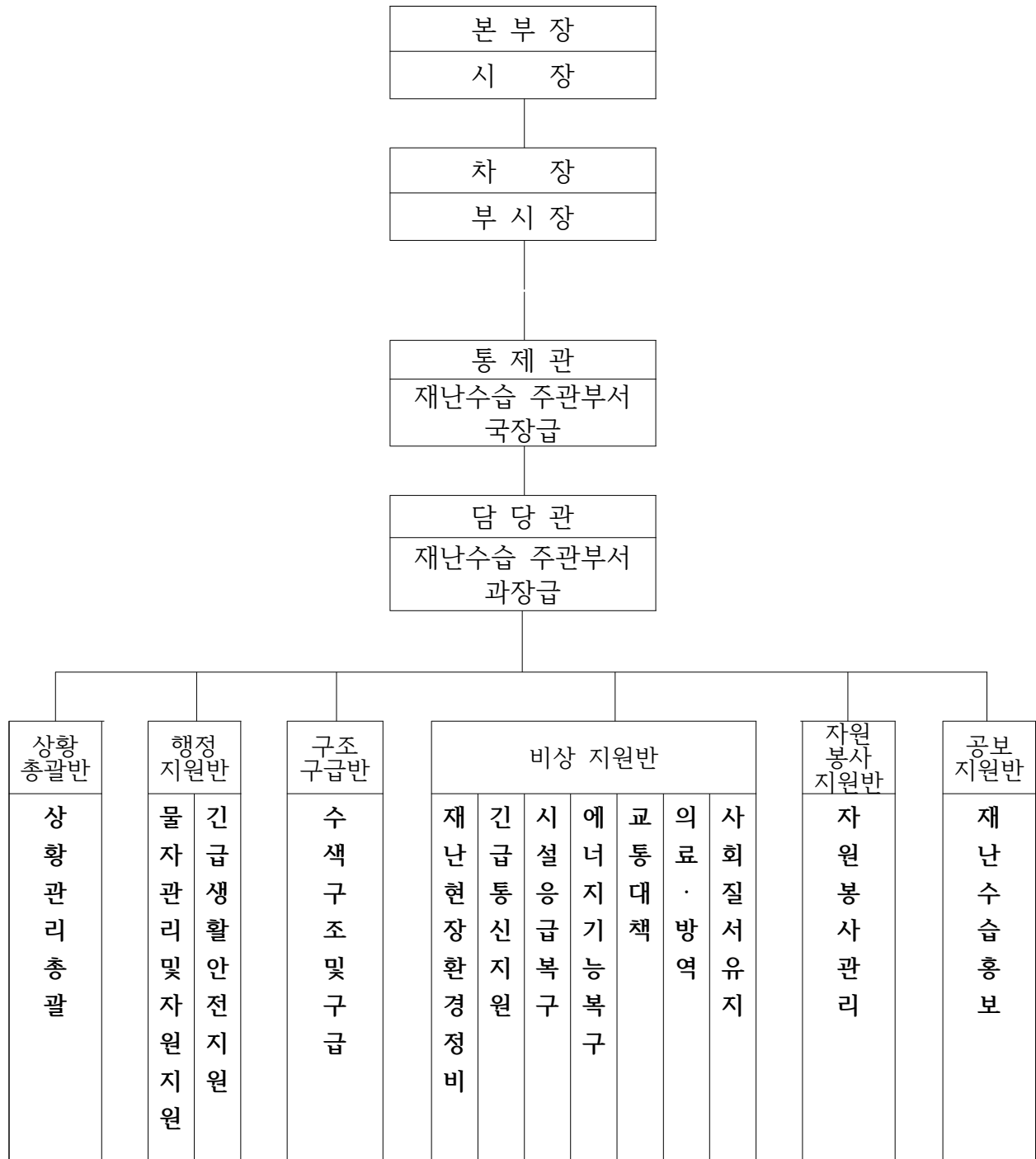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 	보건행정과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해양수산과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사천경찰서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 	사천소방서
재난수습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공보감사담당관
재난대응협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사, KT사천지점 등
현장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 	해당부서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6)

[별표 7]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47)

[별표 8]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0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8)

[별표 9]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4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 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지역 대책 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49)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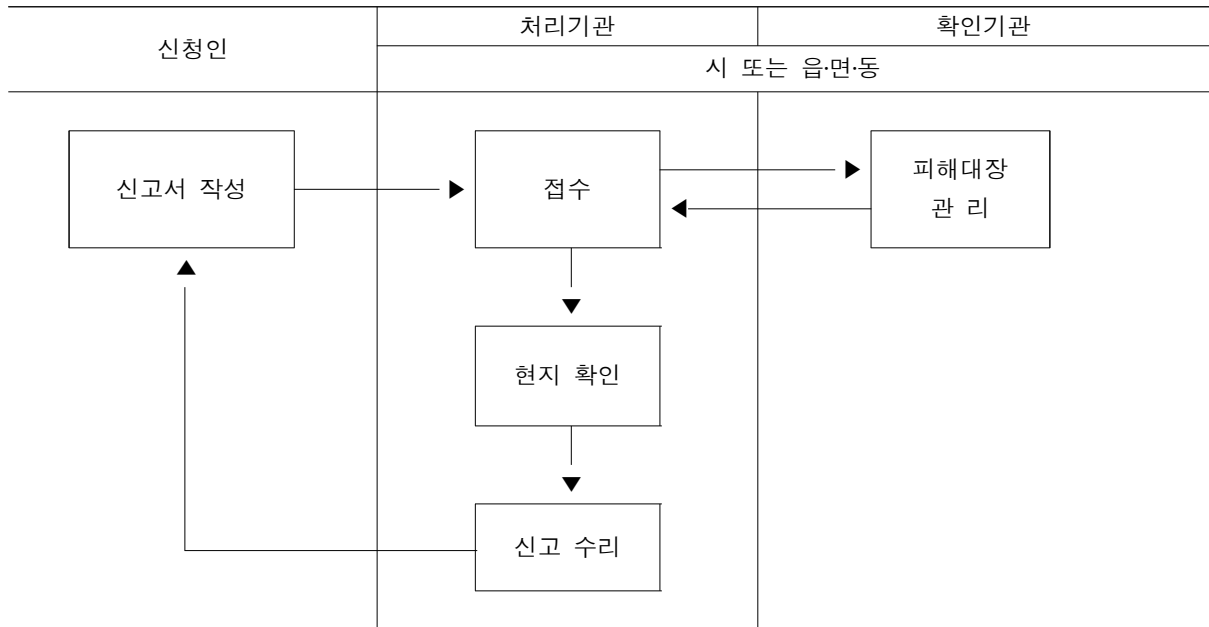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50)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51)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52)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5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를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제3조제8호, 제4조, 제5조, 제7조제3호, 제8조제
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54)

제3조제3호 중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 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5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56)

1. “재난현장 통합대응” 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 이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 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사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팀장” 이란 유형별 사고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과·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현장책임관” 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57)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 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58)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사 천 시 공 보

제 494호(59)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별표 1의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 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60)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 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 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지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61)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 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과·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 한다.

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담당관·과·소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 장을 임명한다.

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과·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읍·면·동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면·동·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62)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63)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64)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 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65)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66)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 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67)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2.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3.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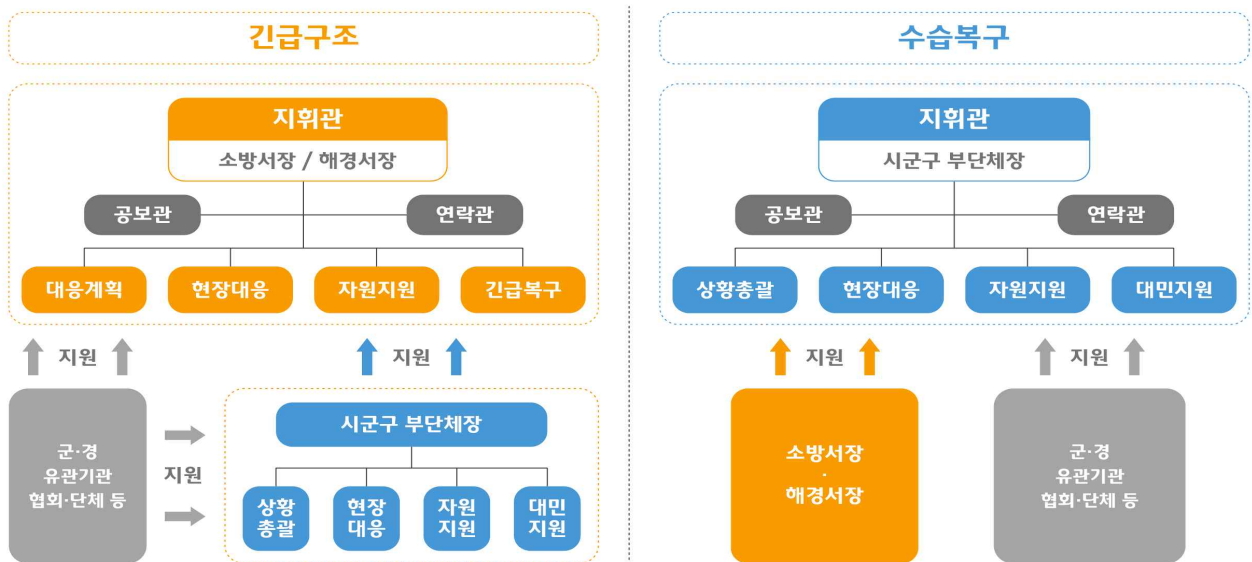
제 494 호 (68)

[별표 1]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제7조 관련)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 표준체계(제7조 관련)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69)

[별표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공보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0)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제7조, 제9조 관련)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주관부서
자연 재난 (5)	① 풍수해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
	② 지진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
	③ 대형화산 폭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
	④ 적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⑤ 가뭄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20)	⑥ 산불	산림청	녹지공원과
	⑦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환경위생과
	⑧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환경위생과
	⑨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⑩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
	⑪ 해양선박 사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⑫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재난안전과
	⑬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축과
	⑭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과
	⑮ 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행정과
	⑯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행정과
	⑰ 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건설수도과
	⑱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⑲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도로과
	⑳ 항공기사고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㉑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㉒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관광과
	㉓ 황사	국민안전처	환경위생과
	㉔ 저수지붕괴	농림수축산식품부	건설수도과
	㉕ 위험물사고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73)

8. “제설·제빙” 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4)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5)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장은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 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부민방위기동대 단위대(이하 “단위대”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 :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2. 읍·면·동 :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7)

제4조(편성기준) ① 기동대는 단위대 대원으로 편성하고, 단위대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부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부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

② 대원(대장, 부대장, 총무 포함)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 연도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단, 통·리민방위대장은 예외로 한다.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단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원 명부를 작성 관리 한다.

제6조(조직) ① 기동대와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부대장·총무는 읍·면·동 단위대장들이 선출 한다.

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기동대장의 추천 한다.

제7조(임기) 기동대와 단위대의 대장·부대장·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8)

제8조(임원의 임무) 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와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와 단위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와 단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
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단위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로 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79)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및 단위대 동원명령은 각각 대장이 한다.

②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 및 단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지휘·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교육)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 한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시가 지정한 교육원에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실비지급) 시장은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등을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① 기동대와 단위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80)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천시 주부민방 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8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독립된 산지로서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와 절개사면이 발생되거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82)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10호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7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8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제2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84)

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제29조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제30조제1호부터 제30조제5호까지를 제3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8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제3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제4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제44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86)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38조제 9호 (가)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안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87)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5. 안건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개별적으로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88)

제69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최된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8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0)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사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반영과 관련한 자문
4.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자문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2)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3)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관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96)

4.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시 관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해외 구매자 초청 상담회
3. 남·여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시장은 정확한 입찰정보 제공과 실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97)

제6조(기업홍보 등) 시장은 시 홈페이지, 사천시보 등 시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자금특례 지원) ①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의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98)

② 제1항 중소기업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창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기업인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99)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0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0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3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 60,000원
2. 재택근무자 : 30,000원(재택근무자 수당은 재택 당직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 행사추진 등을 위해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 장비의 출퇴근 기록이나 초과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03)

근무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04)

고 시

사천시고시 제2017- 61호

목단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목단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1.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내용

- 가. 공사의 명칭 : 목단천 하도 준설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건설수도과장)
- 다.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도로개 설	착공	준공		
목단천	목단천하도 준설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52-32	사천시 곤양면 목곡리 487-18	L=1.1 km	L=1.1 km	L=1.1 km 교량 1개소	2014. 5월	2017. 6월	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보상 1식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에 관한 명세 : 별첨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05)

2.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수도과 하천담당 (☎055-831-3271)

다. 열람서류 : 설계도서, 위치도 등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06)

□ 목단천하도준설사업(서부 중로2-19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

○ 실시계획 변경 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52-32~묵곡리 487-1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천,도로)사업

나. 명 칭 : 목단천하도준설사업(서부 중로2-19호선 도시계획도로)

3.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당 초 : $A=14,494\text{m}^2$

└ 변 경 : $A=47,812\text{m}^2$

나. 규 모 :

┌ 당 초 : 도로개설 $L=1,100\text{m}$, $B=8\text{m}$

└ 변 경 : 목단천 하도준설 $L=1.1\text{km}$, 도로개설 $L=1,100\text{m}$, $B=8\sim 17\text{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4.05.29 ~ 2016.05.29

└ 변 경 : 2014.05.29 ~ 2017.06.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하단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 494호 (107)

1. 토지조사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대 장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기정	변경	증·감											
33	곤양	목곡	487-14	답	381	381	381	-	사천시					
34	곤양	목곡	487-17	답	10	10	10	-	사천시					
35	곤양	목곡	487-13	답	57	57	57	-	사천시					
36	곤양	목곡	487-12	답	44	44	44	-	사천시					
37	곤양	목곡	487-11	답	118	118	118	-	사천시					
38	곤양	목곡	487-10	답	38	38	38	-	사천시					
39	곤양	목곡	1109-21	구	67	55	55	-	농림축산 식품부					
40	곤양	목곡	1192	천	25,780	828	20,291	증 19,463	농림축산 식품부					
41	곤양	목곡	682-4	도	6	6	6	-	사천시					
42	곤양	목곡	683-2	도	15	15	15	-	김**기					미등기
43	곤양	목곡	683-6	답	39	39	39	-	사천시					
44	곤양	목곡	1109-14	구	1,292	35	111	증76	농림축산 식품부					
45	곤양	목곡	681-7	대	2	2	2	-	목단 마을회	목곡리				미등기
46	곤양	목곡	681-6	대	168	168	168	-	사천시					
47	곤양	목곡	681-4	도	53	53	53	-	조*규					미등기
48	곤양	목곡	1130-3	도	58	58	58	-	국토 교통부					
49	곤양	목곡	681-5	대	56	56	56	-	사천시					
50	곤양	목곡	683-1	답	46	-	46	증46	사천시					
51	곤양	목곡	681-1	대	541	-	541	증541	목단마을회					
52	곤양	목곡	681-3	도	50	50	50	-	조*규					미등기
53	곤양	목곡	680-1	도	195	195	195	-	사천시					
54	곤양	목곡	산209	임	27,095	68	68	-	함안조씨 덕곡파성 민환덕소 종계	환덕리				
55	곤양	목곡	679-1	도	413	68	107	증39	사천시					
56	곤양	목곡	산209-1	임	2,161	176	200	증24	사천시					
57	곤양	목곡	1198	답	1,501	-	342	증342	사천시					
58	곤양	목곡	495-15	답	197	-	197	증197	사천시					
59	곤양	목곡	495-14	답	150	-	150	증150	이*룡	목곡리				미등기
60	곤양	목곡	495-13	답	70	-	70	증70	이*룡	목곡리				미등기
61	곤양	목곡	495-12	답	101	-	101	증101	송*래	목곡리				미등기
62	곤양	목곡	495-11	답	107	-	107	증107	배*순	목단길				미등기
63	곤양	목곡	494-18	답	40	-	40	증40	배*순	목단길				미등기
64	곤양	목곡	494-17	답	68	-	68	증68	송*래	목곡리				미등기
65	곤양	목곡	494-16	답	166	-	166	증166	송*래	목곡리				미등기
66	곤양	목곡	494-15	답	243	-	243	증243	정*생	인천 서구 심 곡동 삼용타워				미등기
67	곤양	목곡	494-14	답	76	-	76	증76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08)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비 고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기 정	변 경	증· 감											
68	곤양	목곡	494-13	답	93	-	93	증93	정*호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옥성금융 빌라				미등기
69	곤양	목곡	491-2	답	225	-	225	증225	황*순	목곡리				미등기
70	곤양	목곡	490-15	답	99	-	99	증99	김*균	목곡리				미등기
71	곤양	목곡	490-16	답	28	-	28	증28	배*희	창원시 팔용동 원풍벽산아파트				미등기
72	곤양	목곡	490-14	답	66	-	66	증66	배*희	창원시 명서동 1				미등기
73	곤양	목곡	490-13	답	130	-	130	증130	손*대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13번길				미등기
74	곤양	목곡	490-12	전	161	-	161	증161	조*래	곤양면 성내2길				미등기
75	곤양	목곡	487-24	전	158	-	158	증158	조*래	곤양면 성내2길				미등기
76	곤양	목곡	487-23	답	162	-	162	증162	사천시					
77	곤양	목곡	487-22	답	315	-	315	증31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98				미등기
78	곤양	목곡	487-25	답	12	-	12	증1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98				미등기
79	곤양	목곡	487-21	답	78	-	78	증7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98				미등기
80	곤양	목곡	487-20	답	67	-	67	증6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98				미등기
81	곤양	목곡	487-19	답	210	-	210	증210	이*용	목곡리				미등기
82	곤양	목곡	487-18	답	91	-	91	증9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안양시 안양관교로98				미등기
83	곤양	목곡	1199-1	답	205	-	205	증205	경상남도					
84	곤양	목곡	516-4	도	321	-	96	증96	농림축산 식품부					
85	곤양	목곡	516-7	답	308	-	308	증308	경상남도					
86	곤양	목곡	516-6	답	242	-	242	증242	경상남도					
87	곤양	목곡	516-5	답	304	-	304	증304	경상남도					
88	곤양	목곡	502-22	답	207	-	207	증207	경상남도					
89	곤양	목곡	502-18	답	46	-	46	증46	경상남도					
90	곤양	목곡	502-17	답	49	-	49	증49	경상남도					
91	곤양	목곡	502-16	답	296	-	296	증296	경상남도					
92	곤양	목곡	502-21	답	78	-	78	증78	경상남도					
93	곤양	목곡	502-23	답	29	-	29	증29	경상남도					
94	곤양	목곡	502-20	답	20	-	20	증20	경상남도					
95	곤양	목곡	502-19	답	53	-	53	증53	경상남도					

사 천 시 공 보

제 494호 (109)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 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기 정	변 경	증·감										
96	곤양	목곡	502-15	답	139	-	139	증139	경상남도				
97	곤양	목곡	502-24	답	302	-	302	증302	경상남도				
98	곤양	목곡	502-14	답	599	-	599	증599	경상남도				
99	곤양	목곡	501-3	답	236	-	236	증236	경상남도				
100	곤양	목곡	501-2	대	41	-	41	증41	경상남도				
101	곤양	목곡	1195	도	600	-	48	증48	농림축산 식품부				
102	곤양	목곡	517-7	전	69	-	59	증59	경상남도				
103	곤양	목곡	517-6	전	9	-	9	증9	경상남도				
104	곤양	목곡	517-2	전	2,333	-	12	증12	김*수	목곡리			
105	곤양	목곡	561	구	1,817	-	404	증404	농림축산 식품부				
106	곤양	목곡	523	전	1,792	-	3	증3	배*순	688-3			
107	곤양	목곡	525-1	전	2,532	-	3	증3	손*순	1057			
108	곤양	목곡	562-9	답	794	-	794	증794	경상남도				
109	곤양	목곡	562-8	답	86	-	86	증86	경상남도				
110	곤양	목곡	562-7	답	87	-	87	증87	경상남도				
111	곤양	목곡	559	도	2,903	-	392	증392	농림축산 식품부				
112	곤양	목곡	558	구	7,422	-	102	증102	농림축산 식품부				
113	곤양	목곡	557-9	구	87	-	40	증40	사천시				
114	곤양	목곡	557-12	답	604	-	604	증604	경상남도				
115	곤양	목곡	557-11	답	372	-	372	증372	경상남도				
116	곤양	목곡	1188	도	384	-	91	증91	농림축산 식품부				
117	곤양	목곡	674-16	답	92	-	92	증92	경상남도				
118	곤양	목곡	674-15	답	171	-	171	증171	경상남도				
119	곤양	목곡	674-14	답	75	-	75	증75	경상남도				
120	곤양	목곡	674-13	답	103	-	103	증103	경상남도				
121	곤양	목곡	1186	구	3,649	-	576	증576	농림축산 식품부				
122	곤양	목곡	674-12	답	72	-	72	증72	경상남도				
123	곤양	목곡	674-11	답	260	-	260	증260	경상남도				
124	곤양	목곡	674-10	답	59	-	59	증59	경상남도				
합 계					139,424	14,494	47,812	증 33,318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10)

□ 목단천 및 시도18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방재시설(하천)

1). 하천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연장(m)	폭원(m)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신설	⑤	하천	목단지방하천	곤양면 환덕리 892-48	곤양면 묵곡리 811-3	5,986	10.0~ 150.0	258,470.7	-	

■ 하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하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⑤	목단지방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하천 신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 10.0 ~ 150.0 m -연장 : 5.986km -면적 : 258,470.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체계적인 정비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나. 교통시설(도로)

1). 도로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9	8.0	국지도로	7,073	중로 1-1	소로 1-6	일반도로		2011.8.4	
변경	소로	2	9	8.0	국지도로	5,973	중로 1-1	묵곡리 산209-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9	8.0~ 17.0	국지도로	1,100	묵곡리 산209-1	소로 1-6	일반도로			

사 천 시 공 보

제494호(111)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 2-9호선	소로 2-9호선 중로 2-19호선	○ 당초 도로폭 - 8m : 7,073m ○ 변경 도로폭 - 8m : 5,973m - 8~17m : 1,1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단천(지방하천)의 하도준설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부 도로 폭 변경에 따른 규모별 도로 결정 변경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변경 결정도로서 지형도면을 갈음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94 호 (112)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35호

사천시 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사관리규정 폐지규정

사천시 인사관리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